

預金保險制度의 認識과 運營方案에 관한 實證的 研究*

康吉煥*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경제성장과 산업규모의 변화에 따라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경쟁제한적 각종규제의 완화 및 책임경영을 통한 금융산업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산업 내부적 요구와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제국의 압력과 금융의 국제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자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자율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간에 상호경쟁을 불가피하게 하며,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미숙한 대처와 다양해진 경영위험에 노출될 때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의한 경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예금자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융자율화가 선진국수준으로 진전됨에 따라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행해졌던 암묵적 은행산업에 대한 보호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게 되면, 예금자들은 거래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구책으로 그들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대량의 예금인출(bank run)의 요구는 건전한 은행까지도 일시적 유통성부족으로 지금 불능상태에 빠트리려 흑자도산을 가져와 금융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개별은행의 도산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위협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1994학년도 경기대학교 교비지원(해외파견)에 의해 연구되었음.

를 차단하는 외적보호장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아닌 제 3의 공신력있는 기관이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예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여 파괴적인 예금인출사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부실은행의 원만한 시장 퇴출(exit)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불안의 발생가능성을 줄여준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자율화에 따른 사후적 조치라기 보다 금융자율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소형저축기관과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 투자기관 그리고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금자 보호기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예금은행에 있어 예금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제도화되지 않고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자보호만 있어 왔다. 그러나 향후 금리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가능성도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먼저 예금자들이 예금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후 분석하였다.

설문표본집단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시적 예금자집단 400명과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잠재적 예금자집단 2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방식에 의해 응답을 구하였으며, 응답결과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행하였다. 예금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예금자의 인식에 관해서는 두 예금자집단간에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기위해 χ^2 분석에 의해 동일성검증을 병행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전체 5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금융환경변화와 그 영향 및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에 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설계와 예금은행 및 예금보험제도에 대하여 예금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인지도 분석을 행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관과 대상,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예금자들의 응답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II.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

1. 금융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오랫동안 정부에 의해 크게 규제되어 왔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외부성(externality)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쟁촉진적 측면과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제한적 측면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부터 경제개발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제한된 금융자원을 특정부문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¹⁾으로 금융산업을 이용하였다. 그동안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경쟁제한적인 금융규제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며 경제의 고도화에 의해 규제의 실효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반면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완화(deregulation)라고 통칭되어지는 금융자유화는 금리의 자유화와 은행의 겸업화(업무영역확대)를 촉진시켜 금융기관경영에 있어 경쟁의 심화, 수익성 악화 및 경영위험의 확대를 가져왔다.

1) 금융의 공급선도 기능 : 제한된 금융자원을 전략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극대화 하는것을 말한다.

Edward S. Shaw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1) 금리의 자유화

정부의 금융정책당국은 1960년대 이후 자본축적이 미흡한 가운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규제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금융규제는 금융구조의 불안정 및 금융산업의 낙후화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들어 금융산업이 실물부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은행 경영의 자율화 방안(1980년 12월)」을 계기로 정부는 금리 자율화에 대한 일련의 조치²⁾를 시작하였다. 그후 1988년 12월 5일에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금리자율화³⁾를 실시 하였으나 이후 다시 금리의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라 창구지도를 통한 금리규제가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처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1991년 8월에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은 주로 금리의 직접규제로 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단계 금리자율화(91년 11월 시행)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적고 금리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은행의 경우 그 대상으로 수신면에서는 CD, 거액RP, 거액상업어음, 무역어음 및 3년만기 정기에금 등이며, 여신면에서는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연체대출 등의 금리를 자유화 하였다.

제2단계 금리자유화(93년 11월 시행)에서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여신금리와 2년이상 정기에금과 같은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 하였다. 또한 3차에 걸쳐시행되어온 제3단계 금리자유화(94년 2회 시행, 95년 7월 시행)에서는 수신면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2) 1981년 CP제도 도입과 CP금리 자율화

1984년 Call금리 및 무보증회사채 발행금리 자유화 및 은행대출금리의 밴드(band)제 도입

1985년 전환사채 및 담보부채권 발행금리자유화

1986년 보증부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금리자유화

3) 정책금융을 제외한 제1 및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 자율화 - 은행은 CD 및 2년이상 정기에금 등 장기수신금리와 제2금융권의 시장성 금융상품(CP, 회사채, 금융채 등) 및 실적배당상품(CMA, BMF, 기업금전신탁)에 대한 실질적 금리 자율화

<표-1> 금리자유화추진현황(은행)

구 분	조 치 내 용		금리자유화 비율 ¹⁾	
	수 신	여 신	수 신	여 신
1 단계 (91.11.21)	· CD, 거액RP, 거액상업 어음 및 거액무역어음 일반대출, 3년만기 정기 예금	·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연체대출, (한은 재할인대 상 제외)	50.8%	16.1%
2 단계 (93.11.1)	· 2년이상 정기예금 · 3년이상 적금 등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 제 1, 2금융권의 모든 여신 (제정 및 한은 지원대상 대출제외)	68.5%	87.3%
3 단계 1차(94.7.18) 2차(94.12.1) 3차(95.7.20)	· CD, CP, RP 등의 최단 만기 단축 (91일→60일) · 1년이상 2년미만 예금 · 2년이상 3년미만 적금 · 6개월 이상 1년미만예금 · 1년이상 2년미만 적금 등(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CD, CP, RP 등의 최단 만기단축 (60일→30일)	· 한은총액한도 대출 관련자 금 금리를 우대금리범위내 에서 자유화 · 한은총액한도대출 대상자 금 (상업어음할인, 무역어 음, 소재부품생산자금)	75.0%	89.5%
4 단계 97년이후	·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 · 6개월미만 예금 · 1년미만 적금 등 · 시장금리 변동부상품 (MMC)	· 한은지원정책자금(농수축 산자금, 수출산업설비금융, 중소기업 자금 등)	100%	100%

주1) 금리자유화비율은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임(한국경제신문, 1995, 7.21.)

정기예금과 1년이상 2년미만 적립식 수신 그리고 여신면에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상 대출금리를 자유화 하였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제4단계 금리자유화(97년 이후)에 속한 요구불 예금의 금리 자유화, 시장금리 연동부상품(MMC, MMF)의 도입 및 한은지원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자유화 부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완결되

었다고 할 수 있다.

(2) 은행의 겸업화

겸업화(universal banking)란 상업대출(상업은행)업무와 증권업무(투자은행)를 실질적으로 한 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업무의 분리에 대한 주장은 겸업화가 세계대공황을 일으킨 주 원인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증권화, 시장개방을 통한 국제화,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의 모든 금융산업이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겸업화로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증권 및 투자의 분리라는 분업주의를 지향해 왔으나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분업주의(sound banking)와 겸업주의가 혼재한 상태를 취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은행의 겸업화 과정은 취급업무의 다양화와 주변업무에 대한 진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부수업무 확장과정을 살펴보면 신용카드(1980년), 팩토링(1981년), 상호부금(1983년),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1984년), 신탁업무(1984년)를 비롯하여 1982년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부터 일부 증권업무가 은행업무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후 은행의 증권업무 취급에 관해서는 私募社債 인수허용(1990년 8월), 은행계열 증권회사 허용(1991년) 및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와 금융채발행 허용(1991년 12월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서 확대되었으며 점차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와 더불어 겸업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의 전반적인 흐름이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건전한 유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환경 변화의 영향

(1) 경쟁의 심화

금융자유화라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선 금리자유화에 따른 가격경쟁의 격화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동업자 관계에서 경쟁자 관계를 가져온다. 또한 업무영역 제한의 완화(겸업화)에 따라 신종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금융기관의 업무동질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권역간 경쟁도 한층 치열화될 것이다.

(2) 수익성 악화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출수익율이 규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예대마진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자금조달비용의 큰 상승을 가져와 금융기관의 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금리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방식에 의한 조달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CD, RP, Call Money 등 시장성 단기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⁴⁾. 또한 소액가계자금도 점차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도 고수익 상품으로 자금이동을 나타냄으로써 예대마진이 더욱 축소되어 금융기관의 수지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3) 위험의 확대

이자율이 자유화되고 금융기관의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영과 관련된 위험도 다양화되고 그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먼저 시장에서의 자금 수급에 따라 이자율이 수시로 변동하여 금융기관의 영업성적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이자율 위험이 나타난다. 또한 금융기관의 지급조달방식이 금리자유화로 인해 자유금리에 의한 조달과 시장성 단기자금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화 현상이 필연적이다. 그

4) 94년말 은행고유계정수신고(119조 5천억원)가 신탁계정수신고(103조 1천억원) 보다 16조 4천억원 정도 많았으나 1995년 8월 7일 현재 신탁계정이 은행계정보다 수천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경제신문(1995년 8월 10일)

러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높은 경쟁에 의한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은 위험과 기대수익이 다같이 높은 고수익-고위험 대출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부실대출 증가에 의한 신용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와같은 이자율위험, 유동성위험 및 신용위험의 증가 이외에도 금융기관 보유 자산(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위험, 외환위험 및 업무전산화에 의한 시스템 위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영위험이 확대될 것이다.

3.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

(1). 현행의 예금보호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금보호제도는 정부에 의해 암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즉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예금자의 손실은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쨌든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해 왔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은 은행을 사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됨으로써 은행의 도산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기금형태의 예금자보호제도⁵⁾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호와의 관계 때문에 해당금융기관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부의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도산방지를 통한 금융기관의 보호와 예금자보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보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면서도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5) 신용관리기금(1983년 5월) :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1984년 1월)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안전기금(1984년 1월) : 신용협동조합
 보험보증기금(1989년 6월)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유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이 어렵게 되고 이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하나의 기업으로써 경쟁력이 상실되면 금융시장으로 부터 퇴출(exit)될 수 있어야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한편 금융권별로 예금보호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금융권별로 경쟁력의 차이가 있게 된다. 즉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기금형태의 예금보호제도가 있으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본점에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에 따라 국내지점의 예금자가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은행에 대한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금융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간이다. 즉 금융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금융제도가 안전적이지 못하면 금융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자유화에 의한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간 상호 업무진출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에 적절히 대응하여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와 수익성의 악화 및 경영위험증대에 대응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은행산업에 도입될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먼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과 금융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하며, 금융시장정보를 쉽게 입수하여 대처할 수 없는 일반적인 소액 거래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즉 소액 예금자에게도 결제제도에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안전한 부의 축적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예금의 안전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둘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의 대량인출사태(bank-run)를 방지하여 금융제를 안정화시키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있다. 즉 예금이 보호됨

으로써 경쟁력이 낮은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전체금융제도 및 금융산업의 안전성이 유지될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셋째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는데 있다. 즉 대형은행은 암묵적으로 정부가 보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too big to fail)과 외국은행은 본점의 예금보호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예금이 보호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간의 경쟁여건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규모, 중점영업지역, 국적 등이 다른 다양한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금융기관 및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는데 있다. 즉 금융제도가 불안해지면 이것이 곧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됨으로써 예금자, 예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 설계사로서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에서는 특정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은 제외되고 정책당국만 책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Ⅲ. 예금은행과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분석

1. 연구의 설계

(1) 표본구성과 자료수집

예금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예금주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예금보험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얻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현재 일반회사와 은행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시적 예금자집단 400명과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며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잠재적 예금자집단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눈 것은 예금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인지도 분석에 부가하여 예금자 집단간에 인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갖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1995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월간에 걸쳐 행해졌으며, 설문지의 집단별 회수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설문지 배포와 회수현황

구 분	배 포	회 수	회수율	구성비
잠재적 예금자	200부	182부	91.0%	35.8%
현시적 예금자	400부	326부	81.5%	64.2%
합 계	600부	508부	84.7%	100%

(2) 설문의 구성과 분석기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⁶⁾ 설문의 첫부분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예금주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으로 하였다. 다음 부분은 예금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예금은행에 도입되어질 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입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내용의 추가적 분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인 속성변수에 대한 문항도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법은 예금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예금주들의 응답에 대하여 빈도분석(test of frequency)을 중심으로 하였다. 예금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현시적 예금자와 잠재적 예금자간의 인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비모수통계분석법인 카이제곱분석(χ^2)에 의한 동일성 검정을 SPSS/PC*에 의해 수행하였다.

6) 부록참조

2. 예금은행에 대한 인지도 분석

(1) 예금은행의 선택기준

예금자들이 은행거래를 갖기 위하여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때 수익성(이자율의 크기), 안정성(만기시 원리금의 환급가능성), 편의성(지리적 인접성) 및 금융서비스수준(대출 등 각종 부가서비스) 중에서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3>에서와 같이 예금주들은 무엇보다도 예금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50.0%)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예금은행에 대한 편의성 즉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과 은행이 예금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수준에 따라 은행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각각 26.6%와 17.9%이다.

한편 은행의 경영전략의 실패나 부실대출 등 자금운용의 불건전성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초래되어 예금의 원리금에 대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는 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만이 은행선택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표-3> 예금은행의 선택기준

단위: 명, ()안은 %임

구 분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	금융서비스 수준	소 계	χ^2
잠재적 예금자	65 (35.7)	7 (3.8)	79 (43.4)	31 (17.0)	182 (100)	41.39*** d.f=3
현시적 예금자	189 (58.0)	21 (6.1)	56 (17.2)	60 (18.4)	326 (100)	
합 계	254 (50.0)	28 (5.5)	135 (26.6)	91 (17.9)	508 (100)	

주) *** : $\alpha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특히 현시적 예금자집단은 잠재적 예금자집단보다 은행선택요인중에서 편의성에 비해 수익성을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있지만 두 집단 모두 안정성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예금자들이 은행을 선택할 때 예금은행들이 정부의 강력한 금융기관안정화 정책의 보호하에 있어 왔기 때문에 예금은행의 원리금 환급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선택 기준은 안정성을 제외한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꼽고⁷⁾ 다음으로 편의성이나 금융서비스 수준을 고려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이 사전적 규제보다 예방적이고 사후적 감독 위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그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조하게 될 때에도 예금자들의 은행선택 기준이 같으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예금자들이 우리 나라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응답이 63.0%로 부실화를 우려하는 응답 27.6%에 비해 2배이상 되지만 예금주들은 대체적으로 예금은행의 부실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실화 가능성에 대하여 현시적 예금자 집단이 훨씬 민감하게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을 현시적 예금자들은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경제 현상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 금융정책 당국이 산업자금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과 저금리정책 등 정부 주도형 산업자금 조달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금은행의 여신관리기능이 취약하게 되어 부실 여신이 점증하는데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정책 당국은 특정은행에 중대한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 구제금융 등을 통하여 예금

7) 국민은행부설 국은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85년부터 94년까지의 가계 저축형태분석」에 의하면 저축수단선택에서 수익성을 으뜸이라고 답한 도시가계는 85년 20%에서 94년 30%로 증가한 반면에 안전성은 85년 45%에서 35%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85년부터 94년까지의 가계 저축형태분석」, 국민은행부설 국은경제 연구소, 1995.

<표-4>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I)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생각할 수 있다	그저 그렇다	생각할 수 없다	소 계	χ^2
잠재적예금자	35 (19.0)	17 (9.5)	130 (71.5)	182 (100)	10.62*** d.f=2
현시적예금자	105 (32.2)	31 (9.5)	190 (58.3)	326 (100)	
합 계	140 (27.6)	48 (9.4)	320 (63.0)	508 (100)	

주) *** : $\alpha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은행의 도산⁸⁾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잠재적 안전망(implicit safety net)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예금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정부의 안전망은 가장 확실한 예금보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금주들은 대체적으로 은행의 부실화가 우려 되더라도 도산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자유화가 더욱 진전되어 예금은행 간에 경쟁이 크게 확대 되었을 때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하여 예금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유화의 확대를 전제하였을 때 그 이전에 비해 예금주들은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부실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1.1%로써 <표-4>에서의 27.6%에 비해 거의 3배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잠재적 예금자 집단은 현시적 예금자 집단보다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훨씬 우려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8) 여기서 말하는 예금은행의 도산은 당기의 손실이 자기자본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금액에 달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이윤+자기자본 \leq 0일 경우라 할 수 있다.

<표-5>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II)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생각할 수 있다	그저 그렇다	생각할 수 없다	소 계	χ^2
잠재적 예금자	160 (87.9)	13 (7.1)	9 (5.0)	182 (100)	10.62*** d.f=2
현시적 예금자	252 (77.3)	27 (8.3)	47 (14.4)	326 (100)	
합 계	412 (81.1)	40 (7.9)	56 (11.0)	508 (100)	

주) *** : $\alpha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금융자율화가 확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전·후에 있어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 분석해 보았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차분석에 의하면 먼저 금융자율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응답에 있어 변화가 없는 응답 비율이 40.9%인데 비해 금융자율화의 진전을 고려하였을 때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이 바뀐 비율이 59.1%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은행들은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자금운용을 확대하게 되어 부실 여신(회수 의문과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이 증대되어 예금은행의 경영부실화⁹⁾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금주들이 생각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9) 95년 상반기동안 예금은행들은 경쟁적인 금리파괴상품판매에 의한 역이자 발생, 유가증권투자에 의한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 그리고 다수 기업의 부도에 따른 부실여신이 증가하여 경영부실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상반기결산시 적립해야할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적정비율을 유가증권평가손실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예금은행의 대외신임도때문에 취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 6. 30.」

<표-6> 부실화 가능성 교차 분석표

단위: 명, ()안은 %임

자율화이전 자율화이후	생각할수 있다	그저 그렇다	생각할 수 없다	합 계
생각할수 있다	140	36	236	412 (81.1)
그저 그렇다	-	12	28	40 (7.9)
생각할 수 없다	-	-	56	56 (11.1)
합 계	140 (27.6)	48 (9.4)	320 (63.0)	508 (100)

주) 변화없는 응답비율 : $\{(140+12+56)/508\} \times 100 = 40.9\%$ 긍정적으로 변한 응답비율 : $\{(36+236+28)/508\} \times 100 = 59.1\%$

95년도 상반기 동안 5대 시중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표-7>에서와 같이 부실여신 총액이 94년말 대비 53.5%¹⁰⁾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상반기 동안 증견 기업들의 잇단 부도와 일부 산업 합리화의 차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융자율화 진전에 따라 예금은행들의 부실여신이 증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7> 5개 시중은행 부실여신 현황

단위 : 억원, ()안은 %임

구 분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계
'94년 12월말	2,294 (1.2)	1,070 (0.6)	2,197 (0.9)	1,690 (0.8)	4,024 (2.3)	11,275
'95년 6월말	3,721 (1.7)	1,525 (0.8)	4,794 (1.9)	2,168 (1.0)	5,094 (2.7)	17,302

주) ()안은 부실여신 비율임

부실여신 :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

부실여신 비율 : 부실여신/총여신 $\times 100$

자료 : '95 상반기 일반은행 부실여신 현황, 한국은행감독원, 1995. 8.

10) 95년도 상반기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전체에 대한 부실여신증가율은 작년대비 41.9%이다.

한편 한·일간에 은행의 도산확률에 대한 비교연구를 <표-8>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예금은행들의 도산확률¹¹⁾은 일본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그러나 매년 도산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4년에 있어 지방은행의 도산확률이 0.173%로 시중은행의 0.12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신탁자산을 고려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 도산확률이 각각 0.145%와 0.410%로 크게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행의 도산확률 증가의 결과는 금년 들어 일본에서 3개의 신용조합과 제2지방은행 중에서 30년 이상 상장기업이었던 효고은행(兵庫銀行)의 해산을 가져온 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은행들도 점차 도산확률이 증가됨에 따라 일본에서와 같은 금융기관의 파산이 예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예금보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8> 은행 도산확률의 한·일 비교

(단위: %)

국 별	구 분 ¹⁾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5년 평균	신탁자산고려
일 본 ³⁾	도시은행	0.322	0.339	0.254	0.239	0.262	0.283	-
	지방은행	0.702	0.690	0.695	0.609	0.628	0.665	-
한 국	시중은행	0.099	0.092	0.114	0.137	0.121 ²⁾	0.113	0.145
	지방은행	0.115	0.154	0.160	0.152	0.173	0.151	0.410

주) 대우경제연구소, 한국은행들의 도산확률, 1995.5.

1) 도산확률 계산 : 일본 도시은행 (11개 평균), 지방은행 (64개 평균)

한국 시중은행 (6개 평균), 지방은행 (10개 평균)

2) '94년 시중은행의 도산확률이 낮아진 것은 증가가 허용되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3) 일본은행의 경우 89년대 후반 버블기에 급증했던 순이익의 대폭 감소와 90년대 초 발생한 부실채권 상각에 의한 순이익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 도산확률 = 이윤율의 표준편차 / (이윤율 + 자기자본비율)

여기서 이윤율 = 세전순이익 / 은행자산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세후순이익) / 은행자산 (은행계정총자산 - 지급보증대충)

이윤율의 표준편차 = 80년부터 10년간 이윤율로부터 계산함.

(3) 뱅크런(bank-run)의 발생 가능성

은행산업은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산업내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경영악화가 발생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초래하기 쉽다. 이때 예금자들은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예금 지급 능력이 있는 은행과 없는 은행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불능 상태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저취 (bank-run) 현상으로 쉽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예금은행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부실이 문제되고 있다는 소식, 즉 부실여신의 크기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금자들은 얼마나 예금인출 동기를 갖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금은행의 부실 소식을 듣게 되면 예금 인출 동기를 갖는다는 응답이 95.7%에 이르고 있는 반면 예금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으로 예금인출 동기를 갖지 않는다는 응답은 5% 미만이다. 특히 잠재적 예금자 집단이 현시적 예금자 집단보다 금융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9> 뱅크런의 발생 가능성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고려하겠다	그저 그렇다	고려하지 않겠다	소 계	χ^2
잠재적예금자	179 (98.4)	2 (1.1)	1 (0.5)	182 (100)	6.71*** d.f=2
현시적예금자	307 (94.2)	3 (0.9)	16 (4.9)	326 (100)	
합 계	486 (95.7)	5 (1.0)	17 (3.3)	508 (100)	

주) *** : $\alpha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잘 유지되지 못할 때에는 예금자들이 동요함으로써 신용불안이 증폭되어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1) 예금보험의 도입필요성

예금뇌취 현상은 은행의 예금이 확정채무인데 비해 이의 상환을 뒷받침하는 은행의 자산가치는 은행의 경영상태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은행의 도산위험이 있을 경우, 예금주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은행자산에서 서로 먼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체적으로 금융규제완화와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발되어질 것이고 자금조달 코스트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자금운영으로 부실여신 또는 투자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금융환경 변화로부터 부실화된 개별은행의 도산은 이루어지더라도 금융산업전체로 확산되어지는 외부불경제의 예방과 도산금융기관의 소액예금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safety net)가 요구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이러한 안전장치로써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5%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약 5% 미만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잠재적 예금자 집단의 경우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현시적 예금자 집단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같이 잠재적 예금자들이 훨씬 금융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응답자들이 금융자유화의 실천에 따른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요구됨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금융자유화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즉 지금까지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각국의 예를 살펴보면 예금은행들은 대체적으로 결산기 예금잔액의 일정비율(고정요율부담방식)이나 해당은행의 경영평가에 따라 상이한 비율(변동요율부담방식)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출연금을 예금 보호기구에 납부하고

<표-10>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필요하다	그저그렇다	필요치않다	소 계	χ^2
잠재적예금자	171 (94.0)	10 (5.5)	1 (0.5)	182 (100)	20.08*** d.f=2
현시적예금자	258 (79.1)	44 (13.5)	24 (7.4)	326 (100)	
합 계	429 (84.5)	54 (10.6)	25 (4.9)	508 (100)	

주) *** : $\alpha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있다. 예금보험료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예금은행이 부담하게 되지만 예금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예금은행은 예금보험료를 일종의 자금조달 비용으로 보고 예금주에게 예금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부 비용부담을 분담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예금자가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11>에서과 같이 예금주가 일부 비용부담을 한다는 제약하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예금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3%로써 비용부담이 없을 때의 84.5%에 비해 약 13%정도 감소한데 반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약 9%로써 이전에 비해 4%정도만 증가하고 있다. 일부 비용부담의 경우에 예금자 집단별 응답의 변화양태를 살펴보면 잠재적 예금자 집단에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좀더 감소하고 있지만 현시적 예금자집단과 비교하여 예금보험제도의 도입필요성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예금주들은 은행산업의 안전성증대와 은행경영의 부실화 우려의 해소 및 소액예금자보호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금자의 비용부담요소를 고려하기 전후에 있어 이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차분석해 보았다.

<표-11> 예금보험의 도입필요성(일부비용부담)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필요하다	그저그렇다	필요치않다	소 계	χ^2
잠재적예금자	142 (78.0)	31 (17.0)	9 (5.0)	182 (100)	8.12** d.f=2
현시적예금자	220 (67.5)	69 (21.2)	37 (11.3)	326 (100)	
합 계	362 (71.3)	100 (19.7)	46 (9.0)	508 (100)	

주) **: $\alpha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기존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불변인 응답율이 84.8%이며 부정적으로 응답이 변한 경우가 15.2%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예금자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예금주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시 이 점에 대해 사려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12>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교차분석

단위 : 명, ()안은 %임

고려전 \ 고려후	필요하다	그저그렇다	필요치않다	합 계
필요하다	362	-	-	362 (71.3)
그저그렇다	56	44	-	100 (19.7)
필요치않다	11	10	25	46 (9.0)
합 계	429 (84.5)	54 (10.6)	25 (4.9)	508 (100)

주) 의견불변 응답비율 = $\{(362+44+25)/508\} \times 100 = 84.8\%$

부정적으로 응답이 변한 비율 = $\{(56+11+10)/508\} \times 100 = 15.2\%$

(2) 예금보험의 도입효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수익성 저하등의 이유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인출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제 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예금자들이 이 제도로부터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관해 조사하였다.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개개은행의 부실로 인한 도산은 개별적 사건으로 끝나게 되며 예금의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부실은행 도산의 외부효과를 최소화하여 은행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응답이 42.3%로서 이 제도의 가장 큰 도입효과로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한편 정보의 불확실성하에서는 예금주가 은행의 영업상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1%로 나타났으며, 예금보험이 도입되면 대형은행이나 시중은행 및 외국은행이 소규모은행, 지방은행 및 국내은행보다 상대적 안전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게 되므로 금융기관간 경쟁여건이 평준화되어 금융자율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응답이 21.1%이다.

<표-13> 예금보험제도 도입효과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	소액예금자 의 보호	금융기관간 경쟁여건 평준화	금융기관 도산시국민 부담최소화	소계	χ^2
잠재적예금자	92 (50.6)	47 (25.8)	33 (18.1)	10 (5.5)	182 (100)	8.06** d.f=2
현시적예금자	123 (37.7)	111 (34.8)	74 (22.7)	18 (5.5)	326 (100)	
합 계	215 (42.3)	158 (31.1)	107 (21.1)	28 (5.5)	508 (100)	

주) **: $\alpha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이 나타나면 금융산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고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화 도산의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되는데 이 제도 도입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효과에 대한 응답은 5.6%로 나타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예금자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현시적 예금자 집단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와 소액예금자보호 등 여러가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데 비해 잠재적 예금자집단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를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응답결과를 요약해 볼 때 응답자들은 예금보험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예금자보호제도의 인지도

우리나라 예금은행은 경제개발의 추진이래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한된 금융자원을 특정부문에 배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은행의 영업기반은 정부의 통제하에 어느 정도의 예대마진이 보장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으며, 예금자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연쇄적 은행도산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낮아 예금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낮았다.

그러나 제 2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에 따른 예금자보호가 절실했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와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기금(1982년 설립)을 비롯하여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의 안전기금(1983년 설치)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기금(1989년 설치)이 예금자 보호기구로써 운영되어 오고 있다. 예금은행의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들 제도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14>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제 2금융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해 인지도가 매우 낮아 그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10.2%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재적 예금자집단은 현행 제 2금융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14> 예금자보호제도의 인지도

단위 : 명, ()안은 %임

구 분	잘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모르고 있다	소 계	χ^2
잠재적예금자	4 (2.2)	22 (12.1)	156 (85.7)	182 (100)	31.77*** d.f=2
현시적예금자	48 (14.7)	72 (22.1)	206 (63.2)	326 (100)	
합 계	52 (10.2)	94 (18.5)	362 (71.3)	508 (100)	

주) *** : $\alpha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이와 같은 현상은 응답자들이 제 2금융권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적었던 이유와 예금은행에 있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부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경우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IV. 예금보험제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분석

1. 예금보험기관과 대상

(1) 보험기구의 주체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주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예금보호기구의 운영 주체로서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및 관·민 합동형으로 대별될 수 있다.

분석<표-15>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새로 도입될 예금보험기구는 정부주도형(54%)이거나 관·민합동기구(34%)이기를 응답자의 88%가 희망하고 있는 동시에 민간주도형(12%)이 되는 것에 대해 지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은행의 부실화가 경제정책과 경기순환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목표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갖는 신뢰성과 감독기관의 감독과 검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운영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자율규제의 강화와 상호 감시제도를 통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부실화 은행의 정리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독립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형 예금보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민간주도형이 갖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15> 예금보험기구의 주체

구 분	민간 주도	관·민 주도	정부 주도	계
응답자수	61명	173명	274명	508명
구성비	12.0%	34.1%	53.9%	100%

한편 은행산업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예금보험기구가 신뢰성 증진을 위하여 정부주도형이 되더라도 한국은행이나 은행감독원 산하기구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최종 자금공급기능은 은행의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하여 은행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험기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중앙은행 아래 예금보험기구를 두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 의한 암묵적 보호제도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은행감독원이 예금보호제도와 관련을 갖게 되면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기금을 운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 적합하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금보호기구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독립적일 수 있도록 특수 법인(예:공사)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국의 예금보험기구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표-16>와 같이 영·미계통국가들은 공적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대륙계통국가들은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표-16> 주요국의 예금보험 형태

국 가	운용기관명칭	도입시기	가입형태	운영형태
캐나다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67	강제가입	공적기관
프랑스	Deposit Guarantee Fund	1980	강제가입	민간기관
독일	Deposit Security Fund	1976	자율가입	민간기관
이태리	Interbank Deposit Protection Fund	1987	강제가입	민간기관
일본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71	강제가입	관민기관
대만	Cent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85	자율가입	공적기관
영국	Deposit Protection Fund	1982	강제가입	공적기관
미국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83	강제가입	공적기관

(일부 자율인정)

자료) U.S. Department of Treasury, 1991.2.

(2) 보험기구의 가입방식

예금보험기구에 예금은행의 가입방식에는 크게 강제가입방식과 자율가입방식이 있다. 강제가입방식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symetry)하에서 고위험 은행만이 예금보호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에서 나타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전한 은행이 납부한 보험기금이 고위험 은행의 부실화에 충당되므로써 은행간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이 나타날 소지가 크다. 반면에 자율가입방식 하에서는 보험기구 가입여부 그 자체가 투자자에게 당해 은행의 예금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 보험제도의 운용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강제가입방식은 자율가입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에 무임승차(free ride)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기구에 포함될 은행의 규모, 역사, 부실채권 및 자산운용방식 등이 다양하여 위험도가 상이한 금융기관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금보험기구의 가입방식에 대한 <표-17>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구의 운용주체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형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강제가입방식에 대해 약 80%이상이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율가입방식에 대해서도 약 20%정도가 선호를 보이는 것은 경제제도 운영에 대한 민간자율기능을 강조하는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7> 예금보호기구의 가입방식

구 분	강제가입방식	자율가입방식	계
응답자수	409명	99명	508명
구성비	80.6%	19.4%	100%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주체가 정부주도형이 되면 비록 자율가입방식을 취한다하더라도 가입 그 자체가 개별은행의 신용도와 연결되므로 개별은행은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 제도가입 여부를 모국주의(home country)에 따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의 충분한 재원확보와 명시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금보호제도 도입시 모든 예금은행이 참여하는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본다. 주요국의 예금보호기구 가입형태<표-16>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은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 가입대상 금융기관

은행의 예금보험기구 가입방식과 관련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여.

수신 업무를 통한 신용창조를 담당하는 모든 예금은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반은행인 시중은행(15개)과 지방은행(10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은행이 수익성이나 전문성 또는 재원조달의 제약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국민경제의 특수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은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들의 자금조성방법이나 취급업무가 일반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은행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거나 수취하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비통화금융기관 중 개발기관에 속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과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체신예금 등은 예금보호기구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보험대상예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은 예금은행의 경영부실로 도산하게 될 경우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선의의 소액거래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보호대상예금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세가지로 대상범위를 구별지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표-18>에서 살펴보면 먼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및 원금보존 신탁계정과 같은 저축성상품 만으로 한정할 경우에 예금자들이 82.1%가 응답하였고, 저축성예금상품에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금융채와 같은 투자성예금상품 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13.2%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업자 예금을 포함한 예금은행이 갖는 모든 원화예금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우에 4.7%가 응답하고 있다. 이와같은 예금자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예금보호제도의 보호대상예금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성예금상품인 CD등에 대한 보호대상예금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8> 보험대상예금의 범위

구 분	저축성예금 상품한정	투자성예금 상품포함	모든 원화예금	계
응답자수	417명	67명	24명	508명
구성비	82.1%	13.2%	4.7%	100%

보호대상예금의 범위설정은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권형상품과 같이 기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상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간 예금(동업자 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융기관 상호간의 감시체계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보호대상예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사항은 은행신탁계정의 포함 여부이다. 실제 신탁계정은 은행고유계정과 구분되지만 은행도산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에 분리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대상예금 중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보호대상예금의 범위는 모든 원화표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및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을 대상으로 하되 이자는 가산하고 예금주의 차입금은 제외한 순 예금이 적합할 것이다.

<표-19>는 최근 5년간 예금은행의 수신 및 은행신탁계정(금전신탁)에 대한 평균잔액과 기말잔액을 보여주고 있다. 총보험대상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은행신탁계정)은 1994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242조원이 되며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6조원이 된다.

<표-19> 예금은행의 수신 및 은행신탁계정

단위 : 10억원

구 분	은행수신계정						수신계	은행신탁계정	
	저축상품		투자성상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CD	RP	금융채	기타			
평균 잔액	1990	17,249	47,463	3,173	463	1,470	665	70,483	25,001
	1991	20,765	56,768	7,815	559	1,794	680	88,381	32,121
	1992	22,429	64,614	11,854	746	2,003	1,279	102,925	43,372
	1993	21,925	76,453	12,312	921	3,306	973	115,890	63,711
	1994	22,807	89,706	17,503	1,251	4,021	1,473	136,761	93,911
	구성비 ¹⁾	16.7%	65.6%	12.8%	0.9%	2.9%	1.1%	100%	68.7%
기 말 잔 액	1990	31,620	52,434	6,227	358	1,533	368	92,540	29,175
	1991	37,620	60,888	9,258	567	1,651	1,121	111,105	36,628
	1992	36,519	70,727	10,672	997	2,143	1,033	122,091	53,256
	1993	33,240	82,492	14,606	841	3,263	824	135,266	77,184
	1994	35,065	100,125	17,905	1,787	3,632	2,878	161,392	107,300
	구성비 ²⁾	21.7%	62.0%	11.1%	1.1%	2.3%	1.8%	100%	66.4%

주 1) 94년 평균잔액 수신 계에 대한 각 계정의 구성비임

2) 94년 기말잔액 수신 계에 대한 각 계정의 구성비임

* 5년동안 기말잔액대비 평균잔액의 비율은 저축성상품 81%, 투자성상품 92%, 수신합계 82%, 은행신탁계정 85%로 대략 평균잔액이 기말잔액의 83%정도임.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5.4.

2. 보험기금의 조성 및 운영

(1) 기금조성방법

예금보험기구가 보험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먼저 정기적으로 예금은행으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형성하는 경우와 예금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은행으로부터 조성하는 형태가 있다. 보험기금 조성방법으로 적합한 방식에 대한 응답은 <표-20>에서 같이 사전적 보험료납부방식에 대하여 90.9%가 답하였고, 무기금사후분담방식에 대해 9.1%가 응답하고 있다. 사전적 보험료

납부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응답결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피보험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사전적으로 납부받아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운용하며, 부실은행의 도산이 발생하게 되면 이 기금으로부터 예금자에게 예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표-20> 보험기금의 조성방법

	무기금·사후분담제	사전적보험료납부제	계
응답자수	46명	462명	508명
구성비	9.1%	90.9%	100%

사전적 보험료 납부방식은 적정보험료를 산정이 어렵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 및 운용관리비가 발생하는 점 등의 단점을 갖는다. 그러나 무기금사후분담방식 같이 사고발생시 필요기금의 공정한 배분이 어렵다는 점과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을 준다는 점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을 축적해 감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 보험료 납부방식이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예금보험금 한도액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한 은행이 도산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해당은행의 보험대상 예금자에게 지급의무를 지는 보상액(coverage)을 말한다. 예금보험금에 한도를 두는 이유는 가입은행의 고수익-고위험 추구에 따른 도덕적 위험을 줄이고 보험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것이다.

<표-21> 주요국 보험금 지급한도와 보험금

국가	지급한도(자국한도)	미달러기준	원화기준	보험료
캐나다	6만 캐나다 달러	\$ 42,772	3,370만원	부보예금의 0.16%
프랑스	40만 프랑스 프랑	\$ 74,822	5,900만원	무기금
독일	자본금의 30%	N.A	-	총예금의 0.03%
이태리	첫 2억리라의 100% 다음 8억리라의 75%	\$ 490,880	38,700만원	무기금
일본	1천만엔	\$ 100,261	7,900만원	보험대상예금의 0.012%
대만	1백만 타이완 달러	\$ 38,023	2,990만원	부보된 예금의 0.015%
영국	2만 파운드이내 예금의 75%	\$ 23,438	1,840만원	총예금의 0.3%이하
미국	10만 US달러	\$ 100,000	7,880만원	총예금의 0.23-0.31%

자료) U · S Department of Treasury, 1991.2.

주) 원화기준액은 1994년말 현재 환율, 1\$=788.70(기준환율)을 적용하였음

지급한도 범위 결정방식에는 <표-21>에서와 같이 일정한도액까지 전액보상해주는 방식(대다수 국가가 해당됨)과 일정한도까지는 전액(100%) 보상하고 다음한도까지는 일정율보상하는 방식(이태리 등) 그리고 일정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안에서 일정율을 보상하는 방식(영국 등)이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의 범위 설정방식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소액예금자 보호취지에 따라 일정한도까지 전액보상하는 방식(53.3%)이나 일정한도까지 전액보상하고 다음 한도액내에서 일정율(예 75% 정도)을 보상하는 방식(38.4%)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2> 보험금지급한도의 범위

구분	일정한도까지 전액	일정한도전액과 다음한도내 일정율	일정한도내 일정율	계
응답자수	271명	195명	42명	508명
구성비	53.3%	38.4%	8.3%	100%

보험금지급한도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로는 한도액의 수준결정이다. 만약 한도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특정은행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한도액을 넘는 예금자들의 조기이탈을 가져와 연쇄예금인출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예금자들은 사전에 한도액만큼씩 분산예금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한편 한도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예금주들이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예금은행을 선호하여 결국 부실화 은행의 투기적 행위에 동조하게 되며, 그 결과로 보험기금도 고갈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적정지급한도액을 GNP대비로 산정해보면 <표-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략 5백만원-2천5백만원정도가 된다.

<표-23> GNP대비 적정지급한도액

국명	1인당GNP (US \$)	환율	부보한도		부보비율(배)	GNP대비 지급한도액
			자국화폐	달러환산액		
미국	\$ 24,643	1.0000/\$1	10만달러	(US\$100,000)	4.06 ²⁾	24,636,835원 ⁴⁾
일본	\$ 34,104	118.85/\$1	1,000만엔	(US\$89,405) ¹⁾	2.62	15,916,038원
영국	\$ 16,392	1.4812/\$1	2만파운드	(US\$13,502)	0.82	5,000,859원
프랑스	\$ 21,723	5.8955/\$1	40만프랑	(US\$67,848)	3.12	18,962,506원
캐나다	\$ 18,537	1.3240/\$1	6만캐나다달러	(US\$45,317)	2.44	14,842,265원
한국	\$ 7,513	808.10/\$1			평균(2.61) ³⁾	15,845,976원 ⁵⁾

주) 1) 달러기준한도액(1993년 기준) 각국의 부보한도액 환율= 10,000,000/118.85=89,405

2) GNP대비 부보비율 \$100,000/24,643=4.06

3) 5개국 평균치임

4) 미국의 1인당GNP : 미국의 지급한도 = 한국의 1인당GNP : 한국의 지급한도

예시) 24,643 : 100,000 = 7,513 : x

$$x = \frac{7,513 \times 100,000}{24,643} \times 808.1 = 24,636,835\text{원}$$

5) GNP대비 부보한도추정액

• 평균2.61×\$7,513×₩808.1 = 15,845,976(약 1,600만원)

• 95년도 GNP추정액(\$10,000)을 가정하면 2,100만원이 된다.

자료) 조사통계월보 제 4권, 한국은행, 1995, 4.

한편 평균한도지수에 의해 적정지급한도액을 계산하면 93년기준으로 1천 6백만원 정도가 되며, 95년도 GNP추정액 US \$10,000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천1백만원이 된다. 참고로 제 2금융권의 예금자보호기금 부보한도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 안전기금은 500만원, 신용관리기금은 1,000만원¹²⁾,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은 2,000만원 그리고 보험보증기금은 5,000만원까지 부보한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자 보호기금과의 균형 등을 감안해서 지급한도액수준은 1차적으로 2천만원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1993년에 한국은행의 도시가계 저축시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표-24>를 살펴보면 2,000만원 미만 저축자의 누적비율이 86.6%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계저축규모로 미루어 보아도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초기에 예금보험기금의 부보한도는 최소한 2천만원이상이면 적정수준이 될 것 같다.

<표-24> 가구당 저축보유액

저축액	비율		저축액	비율	
	구성비율	누적비율		구성비율	누적비율
없음	4.9%	4.9%	500-1,000만원	27.2%	63.2%
100만원미만	3.0%	7.9%	1,000-1500만원	16.1%	79.3%
100-300만원	13.3%	21.2%	1,500-2000만원	7.3%	86.6%
300-500만원	14.8%	36.0%	2000만원이상	13.4%	100.0%

자료) 한국은행, 도시가계 저축시장 조사, 1993, 1993년 기준 1,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저축금융기관은 은행, 신용협동기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단자회사, 투자신탁,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했음

도산은행의 예금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액 설정에 있어서 전액부보되어야 하거나 전액보보되어야 할 1차 보험금지급한도액의 범위에 관한 설문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2) 재정경제원에서는 신용관리기금법개정안에 금고파산시 보전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1천만원은 1973년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때 도입된 금액수준이다.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천만원미만까지 누적백분율이 42.7%이고 3천만원미만까지 확대하면 78.2%, 4천만원미만이 되면 94.4%까지 된다. 응답결과만 고려할 때 예금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보한도가 높게 책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중평균한 지급한도액은 약 2,300만원이 된다.

<표-25> 예금보험·지급한도액설정

지급한도범위	응답자수	비율	중간금액	누적백분율
1천만원미만	50명	9.8%	1,000만원	9.8%
1천만원-2천만원미만	167명	32.9%	1,500만원	42.7%
2천만원-3천만원	181명	35.6%	2,500만원	78.3%
3천만원-4천만원	82명	16.1%	3,500만원	94.4%
4천만원	28명	5.5%	4,000만원	100.0%
계	508명	100%	-	-

(3) 보험료율의 형태

예금보험기금을 형성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구는 매년 가입 예금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운영한다. 그 후 도산은행이 발생하면 이 보험기금에서 소액예금자의 예금중 일정한도액까지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료는 부보대상예금액에 예금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때 예금보험요율의 결정방법으로는 고정요율제도와 차등요율제도가 있다.

고정요율방식은 보험가입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반영할 요율구조를 산출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보험료계산이 간편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가입은행이 고위험-고수익정책을 추구하는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오히려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편 차등요율 결정방식은 예금은행의 고위험추구 유인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예금은행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요율체계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 또한 부실화된 은행이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

시될 때 해당은행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가져와 수신이 감소하는 반면 보험료부담은 가중되는 단점을 갖는다.

예금보험요율결정방식에 대한 설문<표-26>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실무상의 편리에 따른 고정요율방식에 대해 17.1%밖에 지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가입은행의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요율방식의 채택에 82.9%가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요율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차등요율방식이 채택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예금보험제도 도입초기에 은행의 위험도 측정의 곤란성과 지금까지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여신규모가 은행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서도 도입초기에는 고정요율방식이 적합하리라 본다.

<표-26> 예금보험요율방식

구 분	고정요율방식	차등요율방식	계
응답자수	87명	421명	508명
구성비(%)	17.1%	82.9%	100.0%

이에 더하여 차등요율방식 지지자에 대해 만약 차등요율적용시 어떤 요인이 위험도측정 기준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표-27>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부실여신(회수의문과 추정손실) 비율에 대해 49.9%가 지지하고 있으며, 부실은행 주주에 대한 자율감시를 촉진하고 은행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자기 자본비율(BIS기준)을 위험도측정기준으로 17.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은행 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은행경영평가 등급에 대해 25.4%를 지지하고 있다.

<표-27> 차등요율 결정요인

구 분	부실여신비율	자기자본비율	경영평가결과	기 타	계
응답자수	210명	74명	107명	30	421명
구성비	49.9%	17.6%	25.4%	7.1%	100.0%

이와 같은 응답결과로 미루어 보면 예금자들은 예금보험요율결정시 은행별 위험도 측정기준으로 무엇보다도 현재 안고 있는 부실여신규모와 은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크게 고려하고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의 증대를 위해서는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증자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위험도 측정기준에 대해 상호비교하면 <표-28>과 같다.

<표-28> 위험도 측정기준

은행별	부실여신비율 ¹⁾			자기자본비율 ²⁾ %			현상평가등급 ³⁾		
	총여신	부실여신	비율	92년	93년	94년	92년	93년	94년
조흥	216,332억원	3,721억원	1.7%	9.9	9.8	10.1	B	B	B
상업	186,879억원	1,525억원	0.8%	9.2	9.8	10.6	C	C	C
제일	250,947억원	4,794억원	1.9%	10.1	10.2	10.0	A	B	B
한일	220,184억원	2,160억원	1.0%	11.4	11.1	11.0	B	B	B
서울	189,086억원	5,094억원	2.7%	10.9	9.7	10.6	C	C	C
외환	258,831억원	2,404억원	0.9%	7.4	9.2	9.1	C	B	B
신한	179,876억원	1,350억원	0.8%	13.8	13.3	11.7	AA	AA	AA

주 1) 부실여신비율 = 부실여신/총여신×100

2) 자기자본비율 =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100
(BIS기준에 의한 산출 공식임)

3) 현상평가등급 : 은행감독원에서 실시하며 총 18개 지표로 산정
(AA, A, B, C등급)

자료) 은행경영통계,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1995.

한편 1994년 보험대상예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예금보험기구가 확보할 수 있는 수입보험료 규모<표-29>는 매년 0.01%에서 0.1%수준으로 보험요율 대안을 제시할 때 보험대상예금의 기말잔액을 기준하면 242억원에서 2,423억원 수준이 되며,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206억원에서 2,064억원 수준이 된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해 보면 수입보험료가 대략 25억원에서 36억원정도가 된다.

<표-29> 예금보험요율 수준별 1년간 수입보험료규모

단위 : 10억원

구 분	보험대상 예금	보 험 료 율						
		0.01%	0.012% ¹⁾	0.015% ¹⁾	0.02%	0.03%	0.05%	0.1%
94년 기말잔액	242,290	24.2	29.1	36.3	48.5	72.7	121.1	242.3
94년 평균잔액	206,424	20.6	24.8	30.0	41.3	62.0	103.2	206.4

주) 0.012%와 0.015%는 각각 일본과 대만의 예금보험료율임

V. 결 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국민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정책실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 안정성이 유지되어왔으며 예금자보호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금융시장개방이라는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와 규제라는 경제정책의 효과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생적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자율화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다.

금융자율화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의 효율성제고에 있기 때문에 자율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은행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문제가 제기된

다. 이 때 부실경영으로 인한 개별은행의 도산은 허용하지만 그 파급효과가 건전은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액예금자들이 결제제도에 쉽게 접근하고 안전한 부의 축적수단을 제공받기 위하여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안정성유지를 목적하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현재 다수국가에서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국의 금융구조와 관행 및 경험에 따라 제각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예금보험제도에 있어 일관된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먼저 예금보험제도 도입여건에 대하여 예금자집단의 인지도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금자들은 은행선정시 은행의 안정성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고 수익성이나 편의성을 주요 요소로 들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예금은행의 부실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정도가 낮을 뿐더러 대체적으로 은행의 부실화가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경우에 예금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예금주들이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 필연적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수익성증대를 위한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영방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은행들에 있어 전반적인 경영부실에 대해 예금자들이 뱅크런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금은행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약 85%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비용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안정성제고와 소액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이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인식도가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이들 기관의 이용정도가 적은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시 적

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주체는 은행산업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예금보험기구의 신뢰성 증진과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형으로 되어야 하며, 정부에 의한 암묵적 보호제도와 차별화를 위해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예금보험기구의 가입방식은 예금보험기금의 충분한 재원확보와 명시적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역선택이나 무임승차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이 적합하다.

셋째, 보험가입대상금융기관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한 모든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대상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및 원금보존 신탁계정과 같은 저축성상품으로 한정하고 투자성상품과 은행간 예금 등 기관예금은 제외할 수 있다.

넷째, 보험기금의 조성은 사전적 보험료납부방식에 의한 기금운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산은행발생시 신속하게 보험금지급이 가능하고 예금보험기구가 보험기금을 축적해감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예금자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는 거액예금자의 은행에 대한 자율감시 기능을 촉진하고 소액예금자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초기에는 일정한도액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GNP에 대비한 산출액이나 우리나라 가구당 저축보유액수준 및 예금자들의 응답 등을 고려해볼 때 예금은행의 예금보험 최소보상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예금보험요율 결정방식으로는 은행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예금은행간에 차등요율적용에 대해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 위험도 평가요소로 은행별 부실여신비율이나 경영평가등급 및 자기자본비율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초기에 있어서 은행의 위험도 측정관관성과 부실여신여건을 고려할 때 고정요율방식으로 결정하되 차등요율 적용에 관한 방침을 미리 제시한 후 점진적으로 차등요율적용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길환, “예금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논문집(제36집), 경기대학교, 1995. 6.
- 강병호,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4.
- 국민은행, “85년부터 94년까지의 가계저축형태분석”, 국은경제연구소, 1995.
- 김기근,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현황”, 경제브리프스, 한국산업은행, 1993. 6.
- 김대식, “예금보험제도의 논의에 관한 소고”, 신용관리(6권3호), 신용관리기금, 1994. 9.
- 김대식, “예금보험과 규제 의 필요성” 재무관리연구, 1992.
- 김영진, 금융기관경영, 경문사, 1995.
- 김철교, 금융증권론, 형설출판사, 1992.
-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1995. 6.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은행들의 도산확률”, 1995. 5.
- 박경서,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5. 5.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993. 2.
- 손정식·강병호·허영빈, 금융기관경영론, 박영사, 1992.
- 신용관리기금, “각국 예금보호기구 사업내용”, 신용관리, 1994. 6.
- 신용관리기금, “금융환경의 변화와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993. 5.
- 윤봉한, 금융학원론, 법문사, 1995.
- 정운찬·김대식·김용진, “예금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과제”, 신용관리기금, 1992. 5.
- 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2.
- 최장봉·안종길·김기홍,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5. 7.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1995.7.
- 한국은행,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조사통계월보, 1988. 12., pp. 30-51.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4.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은행감독원, 1995.
-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5. 4.
- 한국조세연구원, “광복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1995. 9.
- 日本銀行, “米國の 預金保險制度を 巡る 最新の 動向, 日本銀行月報, 1992. 12.
- 日本全國銀行協會聯合會; “諸外國の 預金保險制度に 關る 米國會計検査員の 報告書”, 金融, 1991. 5.
- Boyd, John., and Arthur J. Rolnick, “A Case for Reforming Federal Deposit Insuranc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88), Annual Report, (1989)
- Cagno, Daniela Di, *Regulation and Behaviour Towards Risk*, Dartmouth, (1990).
- Compbell, T.S. and Glenn, D., “Deposit Insurance in Deregulated Environment”, *Journal of Finance*, (1984), 775-785.
- FDIC, *Deposit Insurance in a Changing Environment*, (1983).
- Horvitz, Paul, “The Case Against Risk-Related Deposit Insurance Premiums, *Housing Finance Review*, (July 1983).
- James L. Pierce, *The Future of Banking*,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91).
- Kareken, J. and N. Wallace, “Deposit Insurance and Bank Regulation ; A Partial Equilibrium Exposition”, *Journal of Business*, (July 1978), 413-438.
- Marcus, Alan J., and Israel Shaked, “The Valuation of FDIC Deposit Insurance Using Option Pricing Estimat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Nov.1984), 446-460.
- Mark D. Flood, “On the Use of Option Models to Analyze Deposit Insurance”,

-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Jan./Feb. 1990), 19-35
- Michae Dotsey and Anatoli Kuprianov**, "Reforming Deposit Insurance: Lessons from the Savings and Loan Crisis",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Mar./Apr. 1990), 3-28.
- Mishkin, F.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3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2).
- Pennach George G.** "Alternative Forms of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June 1987), 291-312.
- Pyle, David H.** "Deregulation and Deposit Insurance Reform,"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Spring 1984), 5-15.
- Rita Carisano**, *Deposit Insurance; Theory, Policy and Evidence*,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92).
- Shaw, Edward S.**, "Financial Deeping in Economic Developn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Sinn, H.W.**,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North-Holland, (1983).
- Thomson, James B.**, The Use of Market Information in Pricing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Nov. 1987), 528-537.
- U.S. Department of Treasury**, *Modernizing the Financial System: Recommendation for Safer, More Competitive Banks*, (Feb. 1991).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Deposit Insurance : Overview of Six Foreign System*, (Feb. 1991).
- White, Lawrence J.**, "The Reform of Federal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Fall 1989), 11-29.